

#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문

☞ **지원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원 기준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15조 및 별표

-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50%~90% 이내에서 지원)
- 지원받은 단지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2. 지원신청 대상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14조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3층 이상 공동주택

## 3. 지원 범위 :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제14조

-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
-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 등의 보수
- 단지 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
-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 정자 등 주민 휴게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 승강기 유지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 그밖에 어린이집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 **관리비용 지원신청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신청서[서식제공]
- 사업계획서 및 소요사업비 산출기초[서식제공]  
(공사견적서, 사업비 1,5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설계용역 견적서도 함께 첨부)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및 의결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서(**입주자 대표회의 미 구성시**)
- 자기자본 부담금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별 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1.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미만의 단지 및 국민주택규모 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단지

(국민주택규모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이하)

○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 2. 국민주택규모 단지로써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된 주택단지

공동주택 세대별 기준	지 원 금 액
3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70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총사업비의 100분의 60
150세대 이상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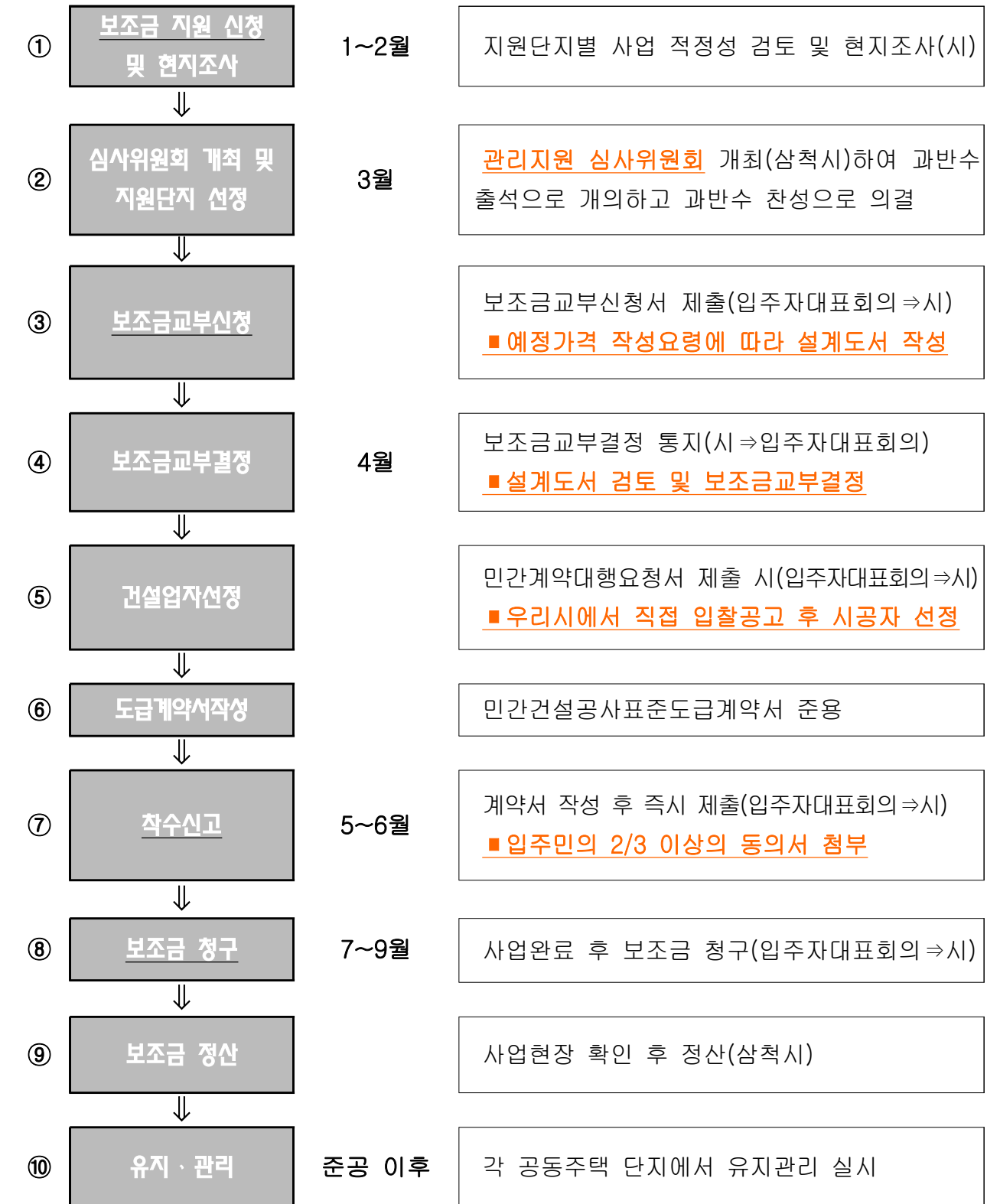
#### 3. 단지 내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

○ 총사업비의 100분의 90(최대한도 2천만원)

※비고 : 1.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

2.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사업의 경우 신청단지는 공동주택 증축과 관련하여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건축 구조 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행위허가를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한다.

## 업무 흐름도



## 유의 사항

### ■ 보조금 지원 신청시

- 지원대상 사업은 「관리비용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소요사업비의 산정은 건설공사표준품셈, 물가정보, 일위대가, 견적가격(품셈에 의한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삼척시 홈페이지 ⇒ 실과소 ⇒ 건축과 ⇒ 공지사항에 게시함.

### ■ 보조금 교부 신청시

-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시에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측량업, 건축사 등록자가 설계함을 추천

### ■ 보조금 교부 결정 완료시

-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이 되면,
  - ① 공사별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민간계약대행요청서 제출 시  
⇒ 우리시에서 직접 입찰 공고후 공사업체 및 계약금액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임
  - ② 공사별 사업비 2,000만원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는 공정하고 투명성이 확보될수 있는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참고

### ■ 착수신고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간의 도급계약서(설계도서 및 내역서 포함) 및  
입주민의 2/3이상 동의서 등 제출

### ■ 보조금 청구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요청



# 사 업 계 획 서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
- 사업현황

보조사업자	사업규모 및 내용	소요사업비(원)			비고
		계	보조금 신청액	자부담금	
입주자대표회의	1식				

## 2. 사업수행계획

- 자기자본 부담금 조달계획
  - 장기수선 총당금 사용(현 적립액 :    원)
  - 입주인 추가 부담(세대별 부담액 :    원)
  - 기 타 :
- 공사 추진 방법 : 도급공사/ 직영공사
- 사업추진일정
  - '19. 01 : 관리비용지원신청
  - '19. 03 : 설계용역 착수
  - '19. 05 :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자 선정, 계약 및 사업 착수
  - '19. 07 : 보조금 정산 및 완료보고

## 3. 보조금의 금액 및 그 산출기초 : 별첨

## 4. 보조사업의 효과

-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양질의 주거단지 조성
- 주민정주의식 및 애향심 고취

## 5. 사업 준공 후 유지·관리계획

- 주민 부담에 의한 사후관리

## 소요사업비 산출기초

사 업 별	공 종 별	산 출 기 초	금 액(원)
총 계			
소 계			
시 설 공 사	1.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2.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4.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		
	5. 단지 내 CCTV 유지보수 및 설치		
	6.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7.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의 설치 및 유지 보수		
	8. 승강기 유지보수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 설치		
	9.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10. 그밖에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		
소 계			
부 대 경 비	설 계 비		
	측 량 비		
	산재보험료 등 제경비		

※ 산출기초 작성 시 “별첨” 내역서 서식에 의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 할 것